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1994. 10. 1 제정 1995. 10. 1 개정 1997. 2. 28 개정 1997. 9. 1 개정 1997. 10. 14 개정 1998. 10. 29 개정 1999. 1. 25 개정 1999. 9. 3 개정 1999. 10. 29 개정 2001. 10. 22 개정 2002. 1. 8 개정 2002. 3. 25 개정 2004. 9. 1 개정 2007. 4. 26 개정 2009. 6. 8 개정 2009. 6. 24 개정 2011. 5. 12 개정 2011. 11. 2 개정 2012. 6. 28 개정 2013. 8. 12 개정 2014. 2. 18 개정 2023. 2.20 개정 2023. 8. 24 개정

-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을 상위 직명으로 임용할 때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과 본 법인정관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교원인사 위원회가 임명제청 동의를 하는 데 있어 임용 대상자의 현 직명의 임용기간 중의연구실적, 교육실적, 봉사실적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8, 2012.6.28>
- 제 2조(정의) 이 내규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개정 2012.6.28>
- 제2조의2(승진임용의 최소기간 및 조기승진)
 -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직급별 본교 최소 재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교수→부교수 : 4년
 - 2. 부교수→교 수 : 6년
 - ② 신임교원 임용시 계약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별표1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충족한 경우, 승진에 필요한 각 직급별 본교 최소 재직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2.20.>

- 1. 조교수→부교수 : 3년
- 2. 부교수→교 수 : 4년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이 조기승진을 원할 경우 조기승진 임용심사를 매학기 초 (3월,9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단축된 최소 재직기간 내(그리고 조교수는 2.5년 재직후, 부교수는 3.5년 재직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교육실적, 봉사실적 기준 산정은 단축된 임용기간 내에서 산정한다.<개정 2023.2.20.> [본조신설 2012.6.28]
- 제 3조(승진임용 심사기준) ①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제청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현 직명의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교육실적, 봉사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적, 교육실적, 봉사실적에 관한 사항은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 규' 및 별표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 ③ 2013년 9.1 이후 임용된 교원의 승진연구업적은 신임교원임용규정 별표3 교원승 진임용심사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8.12.>
- 제 4조(승진임용 제청 동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승진임용 제청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2.6.28>
 - 1. 교원인사규정 제14조(승진·승급 임용의 제한) 및 제28조의2 제1항 각호(면직 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별표 1)에 미달하는 자<개정 2007.4.26>
 - 3. 교원으로서 사표가 될 품성과 인격에 현저한 결함이 있는 자
 - ②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지 못한 경우, 차기 승진임용심사시 승진에 필요한 연평균 연구실적의 50%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8>
- 제 5조(승진임용의 특례)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조교수 이상 직명의 교원은 상 위직명으로 승진임용될 수 없다. 다만, 예·체능계 교원, 임상약학교원 및 산학협력 중점채용형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28>
 - ② 승진임용에 필요한 기간은 본교에서의 현직급 재직년수(휴직기간은 제외)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타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다 본 대학교에 직급을 강임하여 임용된 경우 임용된 직급으로 2년이상 재직 한 자가 교육,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4.9.1>
- 제 5조의2(조기승진) 삭제 <2012.6.28>
- 제5조의3(승진임용 유보에 따른 승급 제한) 승진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는 호봉 승급은 승진할 때까지 유보한다.<개정 2014.2.18., 2023.2.20.> [본조신설 2012.6.28]
- 제 6조(교수 업적평가) 교수로 승진된 자는 정년을 보장하되, 매 4년마다 별표 2의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며, 기준에 미달된 자는 기준 충족 시까지 정기승급을 유보하고 연구년 신청을 제한한다.<개정 2004.9.1, 2007.4.26., 2011.5.12., 2023.2.20.>

부 칙

- 1. 이 내규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별표 1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개정)

부 칙

1. 이 내규는 1997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포함)

부 칙

1. 이 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포함)

부 칙

1. 이 내규는 1997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포함)

부 칙

1. 이 내규는 1998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1. 이 내규는 1999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별표 1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 <주> 2의 기준년수는 1997년 10월 1일 이후 승진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9년 9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1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1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 교육 및 봉사실적은 종전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2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1. 이 내규는 200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교수로 승진된 자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내용과 별표 1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 및 별표 2 '교수업적 평가기준'은 2006년 3월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는 돌아오는 첫 승진의 경우 종전의 내규(부표 1)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승진 시에는 개정된 내규(별표 1)를 적용한다.
 - ②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첫 번째 교수업적평가는 종전의 내규(부표 2)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교수업적평가는 개정된 내규(별표 2)를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별표2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2 신설, 제6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내지 별표2 개정)

부 <2012.6.28.>

-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별표1부터 별표2까지 개정, 제2조의2, 제4조 제2항 및 제5조의3 신설, 제5조의2 삭제)
- 2. (적용례) 제2조의2 제2항의 개정 조문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신임교원부터 적용한다.
- 3.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조교수 임용자에 대한 승진기간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로서 정관 제39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조교수로 임용된 자의 신임교원 계약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승진유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은 종전 내규에 따른 재임용 기준 충족시 1회 재임용하고, 재임용 만료 후 개정된 제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삭제 2014.2.18.>
- 5. (승급유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부교수 이하 교원은 1회에 한하여 승급 유보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후 부터 개정된 제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6. (승진업적평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부교수 이하 교원의 최초 승진 업적평가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 7. (교수업적평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수의 최초 교수업적평가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2013.8.12.>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18.>

-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승진유보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삭제) 제5조의 3 삭제에 의하여 2012년 7월 22일 시행(2012년6월28일 신설) 부칙 제4호는 삭제한다.
- 3. (승진업적평가에 관한 적용례) 2012년 9월1일부터 2013년 9월 1일까지 부교수 이하 직급으로 승진한 교원은 차기 승진시 2012년 6월 28일 개정된 별표1을 1회 적용 후 2014년 2월 18일 개정된 별표1을 적용한다.
- 4.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적용례) 2012년 9월1일부터 2013년 9월 1일까지 교수직급으로 승진한 교원의 정교수 업적평가시 2012년 6월28일 개정된 별표2를 1회 적용 후 2014년 2월 18일 개정된 별표2를 적용한다.

부 < 2023.2.20.>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2-3-6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부 <2023.8.24.>

-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23.9.1.전 교수 직급 승진 교원: 시행일 전 개시된 교수업적평가기간의 심사는 종전의 내규 별표2(2023.2.20.개정)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교수 업적평가기간의심사부터 개정 내규 별표2를 적용한다.

[별표 1]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 개정 2014.2.18., 2023.2.20.

승진 구분	소요 년수	교육 실적 (해당 기간내 연평균		(†	주저자 (교신저자 표함)	봉사 실적 (해당 기간내 연평균		
부교수 → 교수	6년	A B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8.5	국내저명화술지급 이상의 화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7.5이상 (저서는 2.0이내만 인정)	3편이상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A 이공계열B	10.0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2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В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9.5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8.5이상 (저서는 2.0이내만 인정)	3편이상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A 이공계열B	11.0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부교수 → 교수 (조기승진)	4년	년 A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14.0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합이 12.0이상 (저서는 2.0이내만 인정) 단, 국제저명학술지 1.25이상 포함	7편이상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A 이공계열B	17.0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 저명학술지급 이상	3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0.4 (교내 0.2점 포함)	
조교수 → 부교수	4년	A 년 B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6.0	국내저명화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5.0이상 (저서는 1.0이내만 인정)	2편 이상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 u)	
				이공계열A 이공계열B	7.0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저명화술지급 이상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7.0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6.0이상 (저서는 1.0이내만 인정)	2편 이상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A 이공계열B		8.0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조교수 → 부교수 (조기승진)	3년	3년 A .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12.0	국내저명화술지급 이상의 화술지 논문과 저서의합이 10.5이상 (저서는 2.0이내만 인정) 단, 국제저명화술지 1.25이상 포함	4편 이상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A 이공계열B	14.5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2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3-2-3-8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 주 >

- 1) 연구실적, 교육실적의 심사기준 년수는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기산한다.
- 2) 삭제 <2012.6.28>
- 3) 예체능계열의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실적 기준에 준한다. (*개인전 및 복수전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이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2.18.>
- 4) 정보미디어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원의 연구실적은 자연약학계열의 연구실적 기준에 준한다. 다만, 예술계열의 연구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술대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요구되는 연구실적 기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5) 예술계열의 조기승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제적 유명 국공립 미술 관 초대 개인전 실적 1건 이상이어야 한다.
- 6) 학술발표(Proceeding)는 승진 심사기준의 최저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구실적 으로 인정한다.<신설 2013.8.12>
- 7) 2015년 3월 1일부터 조기승진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임용기간 내 영어강의(또는 원어강의)가 매년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3.8.12>
- 8)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시, 정보통계학과, 정보미디어대학 교원의 경우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1편은 주저자 필수, 학술지 1편은 공동저자도 인정한다.<신설 2014.2.18.>

[별표 2] 교수업적평가기준 개정 2014.2.18., 2023.2.20., 2023.8.24.

〈2023.9.1.이후 교수직급 승진 교원〉

평가 기간	교육 실적 (매학기 평균)		연구실	주저자 (교신저자 포함)	봉사 실적 (연평균)			
4년	A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정교수 승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5.5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3.5이상			
			이후 업적평가	4.5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2.0이상		0.4점 (교내 0.2점	
		이공계열A	정교수 승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7.5 (2.2)	연구실적은 국내저명학술지급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후 업적평가	6.0 (1.8)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이공계열B	정교수 승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6.5 (1.9)	연구실적은 국내저명학술지급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후 업적평가	5.0 (1.5)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В	인문사회계열	정교수 승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7.0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과 저서의합이 4.0이상		포함)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이후 업적평가	5.5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3.5이상			
		이공계열A	정교수 승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9.5 (2.8)	연구실적은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후 업적평가	8.0 (2.4)				
		이공계열B	정교수 승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8.0 (2.4)	연구실적은 국내저명학술지급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용계열B 이후 업적평가	7.0 (2.1)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산학협력 실적만 인정			

< 주 >

- 1) 연구실적, 교육실적의 심사기준 년수는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기산한다.
- 2) 삭제 <2012.6.28>
- 3) 예체능계열의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실적 기준에 준한다. (*개인전 및 복수전은 한국연구재단 이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2.18.>
- 4) 이공계열B IT미디어공학전공 교원 및 가상현실융합학과 교원(해당 채용분야 포함)의 연구실 적 중 예술계열의 연구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별표 1-1] 평가기준(예술대실기)을 적용하되(개인전 및 복수전은 한국연구재단 이상으로 인정), 요 구되는 연구실적 기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2.20., 2023.8.24.>
- 5) 이공계열A와 이공계열B의 산학협력 실적은 해당 임용 기간 내 계열별로 별도 제시한 괄호안의 점수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3.8.12., 개정 2023.2.20.>
- 6) 학술발표(Proceeding)는 교수업적평가 심사기준의 연구실적에서 제외한다. 단,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발표는 인정한다.<신설 2014.2.18., 개정 2023.2.20., 2023.8.24.>

〈2023.9.1.전 교수직급 승진 교원〉

평가 기간	교육 실적 (매학기 평균)		연	주저자 (교신저자 포함)	봉사 실적 (연평균)		
4년	A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정교 수승 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4.5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3.5이상		
			이후업적평가	3.5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2.0이상		
		이공계열A 이공계열B	정교 수승 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5.0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후업적평가	4.0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 3.0이상		0.4점 (교내
	В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수학전공	정교 수승 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5.5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과 저서의합이 4.0이상		0.2점 포함)
			이후업적평가	4.5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과 저서의 합이 3.5이상		
		이공계열A 이공계열B	정교 수승 진 후 첫 번째 업적평가	6.5	연구실적은 반드시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1편 필수 (국제저명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B	이후업적평가	5.5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 3.0이상	

<주>

- 1) 연구실적, 교육실적의 심사기준 년수는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기산한다.
- 2) 삭제 <2012.6.28>
- 3) 예체능계열의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실적 기준에 준한다. (*개인전 및 복수전은 한국연구재단 이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2.18.>
- 4) 이공계열B IT미디어공학전공 교원 및 가상현실융합학과 교원(해당 채용분야 포함)의 연구실 적 중 예술계열의 연구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별표 1-1] 평가기준(예술대실기)을 적용하되(개인전 및 복수전은 한국연구재단 이상으로 인정), 요구되는 연구실적 기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2.20., 2023.8.24.>
- 5) 학술발표(Proceeding)는 교수업적평가 심사기준의 연구실적에서 제외한다. 단,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발표는 인정한다. <신설 2013.8.12., 개정 2023.8.24.>
- 6) 이공계열B 정보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IT미디어공학전공 교원의 경우 국제저명학술 지급 이상의 학술지 1편은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도 인정한다.<신설 2014.2.18., 개정 2023.2.20.>